

주차장법중 개정법률

◎ 법률 제4,437호 (1991.12.14)

◇ 주차장법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차장정비 계획 수립시 주차장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계·운영하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주차장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건축물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 20년 단위의 장기계획, 5년 단위의 중기계획 및 1년 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자치구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같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5. 도시교통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의 차등부과 및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1인이 노상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6.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리실등 당해 주차장 부속시설의 설치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도록하여 시정 절차를 간소화 함.
7.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8.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불법주·정차단속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9. 시장·군수는 주차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 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제2항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중 일부 지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자기가 관리청이 아닌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정비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 및 5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과 1년을 단위로 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한다.

④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도시교통현황
2.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분석
3. 주차장정비지구 지정신청계획
4. 주차수요예측
5. 주차시설 공급계획
6. 주차관리정책방향

⑤ 중기계획에는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과 주차시설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주차장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의 제시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차장 정비계획을 확정·시행한다.

⑨ 시장·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의 2(주차장 정비계획의 변경) ① 시장·군수는 주차장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 4 조 제 7 항 내지 제 9 조의 규정은 주차장 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6 조 제 2 항 본문중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구청장의 경우에는 제 3 호의 행위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중 “시장·군수가”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요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 8 조 제 1 항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로부터”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 8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의 2(노상주차장에서 주차행위 제한) 누구든지 노상주차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 7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2.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9 조 제 1 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 4 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5 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 8 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중 “노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을 “노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유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노상주차장의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2 조 제 1 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 3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4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 12 조의 2를 제 12 조의 3으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2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 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동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주차장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도로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제 12 조의 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3 조 제 2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15 조 제 1 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 및 제 4 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 5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16 조중 “시장·군수이외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외의”로 하고,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19 조의 3 제 3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장·군수”로 본다.

제 20 조 제 2 항중 “토지”를 “토지 및 시설물”로 하고, “점용료”를 “점용료 및 사용료”로 한다.

제 21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1 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제 9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 19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 2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

- 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 2 항 제 1 호의 수입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

- 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2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3(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시장·군수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설치·경영할 수 있다.
- 제22조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 제23조 제 1 항 및 제 2 항중 “시장·군수”를

-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 제24조 제 1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 2 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 제24조의 2 제 2 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 제25조 제 1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 제30조 제 3 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 4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 5 항중 “시장·군수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 제32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1991년도 건축사 자격(면허)시험 합격자 공고

1. 일반전형

4 안재린	16 심재호	18 박지하	33 박용구	1249 이동철	1253 박찬일	1255 김한우	1264 김상동	3369 김재영	3426 박창권	3542 강병대	4600 배성환
71 신동규	92 김용철	99 이동철	101 이홍순	1270 주대관	1325 김기성	1349 황중철	1357 정태석	4608 정영규	4664 주경호	4794 김정호	4801 조정래
104 정국주	113 민안식	114 신만식	126 윤여경	1379 김희진	1381 이갑수	1408 박도권	1414 박영순	4803 마중범	4805 이현철	4808 김승익	4809 김일중
128 이상국	139 조순필	150 황성훈	158 구만열	1429 양한성	1430 이인홍	1446 박기열	1452 백원철	4810 성재경	4811 이만희	4812 안성호	4819 남기창
196 홍상우	197 최영우	215 장영호	227 신진환	1492 최대화	1522 우성덕	1544 허길현	1587 임석환	4960 안맹춘	4966 조영일	4968 강상섭	4981 송동희
230 김태원	249 강종규	261 최낙진	262 한기백	1606 이항렬	1612 최진영	1613 윤성운	1614 오종일	4984 강 훈	4987 김홍수	5021 홍한기	5024 김종일
264 김창수	270 오형중	287 김승욱	289 김원배	1616 박영호	1646 이승재	1651 김행세	1696 이재우	5025 이영환	5180 홍병대	5190 최양동	5203 이주승
297 고재형	305 신안준	325 김강진	344 최재인	1703 강용순	1712 이교진	1720 류봉렬	1722 조점환	5222 김용섭	5231 김성락	5241 이종한	5254 박형규
399 권연하	414 김석순	417 김원호	419 조진호	1729 최효숙	1737 라채화	1748 이성균	1753 이종욱	5261 안병연	5265 김희성	5365 박찬경	5372 이태진
422 윤은중	487 권혁기	529 윤홍노	533 안병리	1762 김춘배	1771 장석남	1783 조태정	1784 이홍재	5398 정영필	5461 김중운	5464 손윤락	5487 한덕재
542 임진성	544 송영규	550 천근우	551 조재만	1794 이 봉	1799 김형민	1806 이기정	1807 김선재	5491 김희곤	5505 엄홍복	5506 이기승	5569 송기춘
561 조의곤	564 공순구	565 정진오	583 지현춘	1824 김성기	1829 박기병	1893 이항섭	1933 하태방	5581 조상봉	5582 이창섭	5747 이상호	5749 이호정
588 김성호	597 이인철	599 임채돈	624 권오준	1949 천준호	1969 최해동	2066 이수형	2074 이희주	5789 이경호	5822 이우용	5826 박태장	5834 오희순
629 이성희	642 오승훈	656 서봉식	691 강동구	2081 최용준	2197 정병욱	2198 이장근	2201 서영만	5838 유영재	5843 이종원	5886 윤기원	5901 이항기
718 남상득	727 정준협	732 한필원	820 고명환	2224 이우학	2230 김무홍	2285 황환문	2287 조성문	5956 김정렴	5963 김상현	6007 이계식	6025 최영현
830 강병국	837 최정훈	839 이광배	842 최홍영	2292 김 혁	2293 이종민	2338 박재근	2385 손성태	6050 이근영	6051 성진용	6080 박정춘	6235 이우발
852 김성호	860 오영모	862 유권호	864 이무철	2397 손창수	2418 최삼영	2450 서정대	2477 이한석	6398 유연희	6435 황정복	6488 정윤태	6543 신교영
866 한형우	868 이학명	873 지영근	874 박광열	2495 현도경	2510 조도희	2524 손용경	2573 김현옥	6571 이천복	6670 이광수	6675 하금현	6702 남풍식
882 차신균	887 김철민	889 김정원	904 이재호	2584 임부춘	2597 이운국	2613 김명홍	2624 이찬곤	6795 윤여경	6941 김명환	7045 인형수	7083 조두상
907 임병철	932 이준희	935 김홍백	953 안지훈	2627 한창섭	2645 임혜인	2651 윤 찬	2664 강병태	7107 박승준	7164 김동기	7664 이호성	7702 김주식
954 김태경	967 한용희	975 이규환	1005 권건우	2686 전병후	2692 고인석	2725 노윤경	2726 박 혁	7713 김성수	7731 탁기봉	7780 정세영	8095 최 진
1069 박상돈	1099 오근석	1100 이시훈	1151 심풍섭	2827 홍광근	2845 강봉원	2890 박영수	3077 이종대	8124 오종문	8187 윤주관	8476 이명주	8519 박영기
1168 이항남	1183 김종만	1200 이상수	1217 김현룡	3093 윤광진	3114 박진호	3183 김운형	3186 오영근	8744 박갑주			
1219 김종규	1220 봉종현	1222 문홍길	1241 박명규	3187 한철수	3190 정호영	3257 유윤옥	3334 하봉수				

2. 특별전형

2001 양보국 2001 박병용 20013 김 선 20021 김입수 20025 선우정호 20033 황선자 20027 계은찬 20041 조명식 20049 김정중 20053 김종진

3. 아래 사람은 건축사법 제 9,14조 규정에 의한 응시 자격 재심대상자이므로 재 심사후 합격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1) 일반전형 103 김종호, 248 이동훈, 742 문근환, 1135 홍진표, 1704 박병길, 5185 박철수, 5221 유인국, 5169 손성대
- (2) 특별전형 20003 정현수